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9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 강화 》

- 장종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489호)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977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5
※ 참고자료	21

I. 개요

1. 장종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248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장종태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8. 1.
- (3) 회 부 일 : 2024. 8.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은 부칙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매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그러나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2025년)을 목전에 두고 있고,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 지출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은 점차 가속화되는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임.

이 같은 건강보험의 재정적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할 필

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여 예산편성 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며,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를 삭제하고, 현행법에 기금사용의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297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소병훈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8. 20.
- (3) 회 부 일 : 2024. 8.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기준이 해당 연도의 예상 보험료수입액을 기준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매년 보험료수입액이 과소 추계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에 지원의 기준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6으로 바꾸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9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 2건의 개정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 시한에 관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고, 매년 기금에서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거나(장종태의원안),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소병훈의원안)의 기금사용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현행	장종태의원안	소병훈의원안
<신설>	제25조의2(기금사용의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108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제25조의2(기금사용의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108조의2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현행	장종태의원안	소병훈의원안
②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108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u><삭 제></u>	<u><삭 제></u>

2. 주요 검토 사항

□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건강보험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지원 연혁을 보면, 2000년 통합 국민건강보험¹⁾ 출범 당시 일반회계 지원에서 출발하여 2002년 이후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을 통한 지원이 추가되었으며, 2007년 이후로 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재원으로 하여 당해 연도 예상 보험료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부칙 개정을 통해 2~5년 단위로 재정지원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있는데, 현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음²⁾.

<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 규정 연혁 >

구분	2000~2001	⇒ 2002~2006	⇒ 2007~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
지원기준 및 규모	건강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재량규정)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의 50% 일반회계 35% 증진기금 15%	보험료 예상수입의 20% 상당액 일반회계 14% 증진기금 6% (단,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의 65% 이내)
사용 용도	일반회계 -지역보험급여비 -지역가입자 관리운영비	일반회계 증진기금 -지역보험급여비 -지역가입자 관리운영비 -65세이상 노인급여비	일반회계 증진기금 -가입자파양차 -건강검진 등 보험급여비 건강증진사업 -건강보험사업 -흡연 질병 운영비 급여비 -보험료 경감 -65세이상 지원 노인급여비
지원 기한			2027년 12월 31일

* 자료: 보건복지부

1)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전국의 직장의료보험조합(139개)을 통합함.

2) 부칙 개정을 통하여 2~5년 단위로 재정지원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음('11.12.31.개정(2016년 12월 31일까지), '16.3.22. 개정(2017년 12월 31일까지), '17.4.18. 개정(2022년 12월 31일까지), '23.6.13. 개정(2027년 12월 31일까지)).

□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보면,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및 2020년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인한 당기수지 적자를 제외하면 매년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여 2023년 현재 누적수지 규모는 27조 9,977억원임.

< 건강보험 재정 현황(2013~2023년) >

(단위: 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 입	451,733	485,024	524,009	557,195	579,990	621,159	680,643	734,185	804,921	887,773	949,113
(증가율)	(8.0%)	(7.4%)	(8.0%)	(6.3%)	(4.1%)	(7.1%)	(9.6%)	(7.9%)	(9.6%)	(10.3%)	(6.9%)
· 보험료수입	386,117	412,404	440,476	473,065	500,099	536,415	587,428	624,849	692,270	765,538	815,180
· 국가 지원금 ^{주1}	58,072	63,221	70,974	70,974	67,839	70,802	77,803	92,283	95,720	104,992	109,702
· 기타수입	7,544	9,399	12,559	13,156	12,052	13,942	15,412	17,053	16,931	17,243	24,231
지 출	415,287	439,155	482,281	526,339	572,913	622,937	708,886	737,716	776,692	851,482	907,837
(증가율)	(7.0%)	(5.7%)	(9.8%)	(9.1%)	(8.8%)	(8.7%)	(13.8%)	(4.1%)	(5.3%)	(9.6%)	(6.6%)
· 보험급여비	402,723	424,939	465,009	510,541	555,374	605,896	690,429	718,291	757,265	831,660	887,961
· 관리운영비	12,179	13,753	16,773	15,280	16,835	16,486	17,894	18,851	18,980	19,179	19,337
· 기타지출	385	463	499	518	704	555	563	574	447	643	539
당기수지	36,446	45,869	41,728	30,856	7,077	△1,778	△28,243	△3,531	28,229	36,291	41,276
누적수지	82,203	128,072	169,800	200,656	207,733	205,955	177,712	174,181	202,410	238,701	279,977

보험료율 (인상율)	5.89% (1.6%)	5.99% (1.7%)	6.07% (1.35%)	6.12% (0.9%)	6.12% (-)	6.24% (2.04%)	6.46% (3.49%)	6.67% (3.2%)	6.86% (2.89%)	6.99% (1.89%)	7.09% (1.49%)
수가인상율 (환산지수)	2.36%	2.36%	2.20%	1.99%	2.37%	2.28%	2.37%	2.29%	1.99%	2.09%	1.98%

* 주1: 국가 지원금=일반회계 14%(일반회계 과징금 50%) + 국민건강증진기금 6%(담배부담금 수입의 65% 상한)

* 주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3.11월)으로 '24년부터 과징금 지원액 미포함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우리 사회는 2025년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 지출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강보험의 재정 문제는 점차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32년까지 계속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건강보험 재정수지 및 준비금 전망: 2023~2032년]

(단위: 조원, %)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연평균 증가율
수입	93.3	98.8	106.5	114.9	123.9	133.7	144.3	155.6	165.0	175.2	7.2
지출	92.0	100.2	109.7	121.6	132.7	144.4	154.8	166.1	180.1	195.1	8.7
재정수지	1.3	-1.4	-3.2	-6.7	-8.8	-10.7	-10.5	-10.5	-15.2	-20.0	
누적 준비금	25.2	23.8	20.6	13.9	5.2	-5.5	-16.0	-26.5	-41.6	-61.6	

주: 1. 누적 준비금은 결산상 잉여금을 뜻하며, 음수로 표기된 준비금은 준비금 소진 후 발생한 누적 적자액을 뜻함

2. 2023, 2024년 건강보험료율은 기결정된 7.09%, 2025~2032년은 매년 2.06%(최근 3년 평균)씩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2030년부터 8% 상한 유지를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아울러, 국가 지원금(일반회계 14%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6%) 규모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과 연동됨에 따라 건강보험료율, 가입자의 보수월액 증가와 함께 국가 지원금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

< 건강보험 국가 지원금 현황(2013~2023년) >

(단위: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국가 지원금 계(A+B)	57,994	63,149	70,902	70,917	67,747	70,711	77,671	92,152	95,589	104,862	109,571
일반회계(A)	48,008	52,958	55,717	52,003	48,736	51,910	59,589	73,351	76,423	86,712	91,363
증진기금(B)	9,986	10,191	15,185	18,914	19,011	18,801	18,082	18,801	19,167	18,149	18,208

* 주: 위 표의 “일반회계” 지원금에서 과징금 수입을 통한 지원금은 제외되어 있음

*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일반회계와 기금 모두 매년 법정지원율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과소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2024년도의 경우 예상수입액 대비 정부지원율은 일반회계 12.1%, 국민건강증진기금은 2.3%로 나타나고 있음.

< 2023~ 2024년 건강보험 정부지원 >

(단위: 억원)

구분	보험료 예상수입	예산액			보험료 수입 대비 비율		
		소계	일반	기금	소계	일반	기금
'23년 예산	761,822	109,702	91,494	18,208	14.4%	12.0%	2.4%
'24년 예산	846,022	121,658	102,636	19,022	14.4%	12.1%	2.3%
('23년 대비)	(+84,200)	(+11,956)	(+11,142)	(+813)	(-)	(0.1%p)	(△0.1%p)

□ 이에 더하여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보험료 수입을 보면 2020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예상 보험료 수입금액보다 실제 보험료 수입금액이 더 많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지원 금액 기준은 해당 연도의 예상 보험료수입액을 기준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더욱 과소지원되는 경향이 있음.

□ 관련하여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심사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금액의 과소계상 문제가 지적되어 정부지원 관련 법정비율을 준수하라는 ‘주의’ 시정요구가 행해진 바 있음.

<건강보험 국가 지원금 현황(일반회계, 2013~2023)>

(단위: 억원, %)

연도	보험료수입*			예산수입액의 14% (D=A*14%)	조정계수 (E)	실제 지원액 (F=D+E)	실제 보험료 수입 대비 지원금 (G=F/B)	법정지원율(14%) 대비 미달 비율 (H=14%-G)
	예산 (A)	실적 (B)	과소추계 규모 (C=B-A)					
2013	342,911	386,117	43,206	48,008	-	48,008	12.4%	1.6%p
2014	370,464	412,404	41,940	51,865	1,093	52,958	12.8%	1.2%p
2015	397,975	440,476	42,501	55,717	-	55,717	12.6%	1.4%p
2016	421,733	473,065	51,332	59,043	△7,040	52,003	11.0%	3.0%p
2017	444,440	500,099	55,659	62,222	△13,486	48,736	9.7%	4.3%p
2018	533,209	536,415	3,206	74,649	△22,739	51,910	9.7%	4.3%p
2019	578,154	587,428	9,274	80,942	△21,353	59,589	10.1%	3.9%p
2020	639,260	624,849	-14,411	89,496	△16,145	73,351	11.7%	2.3%p
2021	664,901	692,270	27,369	93,086	△16,663	76,423	11.0%	3.0%p
2022	727,540	765,538	37,998	101,856	△15,144	86,712	11.3%	2.7%p
2023	761,822	815,180	53,358	106,655	△15,292	91,363	11.2%	2.8%p

* 주: 위 표의 “실제 지원액”에서 과징금 수입을 통한 지원금은 제외되어 있음

* 자료: 보건복지부

□ 기금 지원금의 경우에도 예상 보험료 수입액의 6%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예상 보험료 수입금액보다 실제 보험료 수입금액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지원 상한인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의 65%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료의 6%보다 더 낮게 나타남으로 인하여 더욱 과소 지원된 문제가 있었음.

<담배부담금 예상수입(65%)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6%) 비교(2013~2023년)>

연도	지원상한	<	지원기준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의 65%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6%
2013	10,198	<	20,575
2014	10,191	<	22,228
2015	15,185	<	23,879
2016	18,914	<	25,304
2017	19,936	<	26,666
2018	19,731	<	31,993
2019	19,011	<	34,689
2020	18,801	<	38,356
2021	19,167	<	39,894
2022	18,149	<	43,652
2023	18,208	<	45,709

<건강보험 국가지원금 현황(국민건강증진기금, 2013~2023년)>

(단위: 억원)

연도	예상 보험료수입(A)	지원액(B) ³⁾	예상 보험료 수입 대비 지원금 (C=B/A)	법정지원율(6%) 대비 미달 비율 (D=6%-C)
2013	342,911	9,986	2.9%	3.1%p
2014	370,464	10,191	2.8%	3.2%p
2015	397,975	15,185	3.8%	2.2%p
2016	421,733	18,914	4.5%	1.5%p
2017	444,440	19,011	4.3%	1.7%p
2018	533,209	18,801	3.5%	2.5%p
2019	578,154	18,082	3.1%	2.9%p
2020	639,260	18,801	2.9%	3.1%p
2021	664,901	19,167	2.9%	3.1%p
2022	727,540	18,149	2.5%	3.5%p
2023	761,822	18,208	2.4%	3.6%p

*자료: 보건복지부

□ 이러한 현실에서 2건의 개정안은 기금을 통한 지원이 매년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준을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으로 변경하여 추정치가 아닌 실적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됨으로써 불명확성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특히 향후 고령화 심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계속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지출 증가 속도만큼 보험료율 인상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및 각 개정안4) 규정 비교>

구분		현 행	장종태 의원안	소병훈 의원안
지 원 금 액	지원 기준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
	지원 비율	6%	3%	6%
	재량 여부	상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지원 상한		해당연도 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65%	삭제	삭제
일몰 규정		'27년 12월 31일까지	삭제	삭제
조문 방식		부칙	본칙	본칙

□ 개정안별 기준에 따라 2024년도 기금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 규모를 산출해 보면, 장종태의원안은 2조 2,966억 1,400만원, 소병훈의원안은 4조 5,932억 2,8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현행 규정

3) 위의 담배부담금의 65%와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2013, 2017, 2018년의 경우 실제 지원은 그보다 적은 액수로 집계되었음.

4)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2202487호)에서는 일반회계에서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 비율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로 상향하여 전체 국가 지원금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20%’로 함으로써 ‘20%’라는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2202977호)에서는 지원기준만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으로 바꾸고 일반회계 14%, 기금 6%의 비율은 유지하고 있음.

에 따른 지원금에 비하여 장종태의원안은 3,944억 3,300만원, 소병훈의원안은 2조 6,910억 4,700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각 개정안의 기준에 따른 지원금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현행	장종태의원안	소병훈의원안
지원비율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 (단, 당해연도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 한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국고지원금 규모	1,902,181 * '24년도 담배부담금 예상수입(29,264억원)의 65%	2,296,614	4,593,228
추가 재정소요	-	+394,433	+2,691,047

※ '24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846,022억 원, '24년도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 29,264억 원,
'22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 765,538억 원

* 자료: 보건복지부

□ 첫째,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등에 한정하여 사용됨.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신체활동장려사업
8. 구강건강관리사업
9.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10.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11.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2.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 용도를 보면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등으로 되어 있어 기금이 건강보험사업을 지원하는 데 관련성도 있는 것으로 보임.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생략)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생략)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 그러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 내역 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법정부담금의 상당액(2021년: 64.7%, 2022년: 64.2%, 2023년 61.2%)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법정부담금 수입이 2조 9,000억원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겠음.

관련하여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심사에서는 “보건복지부는 2024년 12월 완료될 예정인 ‘국민건강증진기금 중장기 운용 전략 마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이 채택된 바 있음.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 현황(2019~2024년)>

(단위: 백만원)

구 분		'19년 결산	'20년 결산	'21년 결산	'22년 결산	'23년 결산	'24년 계획
수입	☐ 자체수입	2,889,588	3,045,893	3,071,450	2,953,924	3,099,777	3,104,011
	○법정부담금	2,810,503	2,967,130	2,962,962	2,824,994	2,973,665	2,926,433
	○재산수입	4,765	4,891	7,151	15,006	25,564	9,016
	○기타수입	74,320	73,872	101,337	113,923	100,548	168,562
	☐ 정부내부수입	734,462	780,898	904,759	943,044	1,262,389	1,209,312
	○공자기금 예수금	675,164	748,300	845,922	700,000	700,000	1,077,704
	○계정간전입금(의료계정)	59,298	32,598	58,837	243,044	562,389	59,447
	○계정간전입금(증진계정)	-	-	-	-	-	72,161
	☐ 여유자금 회수	302,108	289,987	324,506	353,419	161,637	244,808
합계		3,926,158	4,116,778	4,300,715	4,250,388	4,523,803	4,558,131
지출	☐ 사업비	3,306,951	3,369,531	3,452,690	3,447,102	3,666,340	3,637,642
	○경상사업비	1,498,712	1,489,439	1,536,040	1,632,162	1,845,501	1,735,461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1,808,239	1,880,092	1,916,650	1,814,940	1,820,839	1,902,181
	☐ 기금운영비	87	89	89	63	85	98
	☐ 정부내부지출	329,078	422,652	494,454	641,648	724,876	690,041
	○공자기금예수금 이자상환	49,780	51,454	55,617	59,604	88,487	138,433
	○공자기금예수금 원금상환	220,000	338,600	380,000	339,000	74,000	420,000
	○보건의료계정으로 전출	59,298	32,598	58,836	243,044	562,389	59,447
	○국민건강증진계정으로 전출	-	-	-	-	-	72,161
	☐ 여유자금 운용	290,042	324,505	353,482	161,575	132,502	230,350

☐ 둘째, 개정안들은 기금의 지원기준을 조정하면서 지원 상한을 없애고 있는데,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2016년과 2017년 제외)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의 100%를 투입하여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6%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상한을 없앨 경우 건강증진기금의 법정 사용 내역인 금연교육 등에는 전혀 쓰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들을 수용하더라도 상한은 존치시킬 필요도 있겠음.

<담배부담금 예상수입(100%)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6%) 비교(2013~2023년)>

연도	지원기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6%)		연간 담배부담금 예상수입 총액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의 100%)
2013	20,575	>	15,689
2014	22,228	>	15,679
2015	23,879	>	23,362
2016	25,304	<	29,099
2017	26,666	<	30,670
2018	31,993	>	30,356
2019	34,689	>	29,247
2020	38,356	>	28,924
2021	39,894	>	29,487
2022	43,652	>	27,922
2023	45,709	>	28,013

□ 아울러, 개정안과 같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한시적 특례를 삭제하고 항구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재정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과 건강보험사업 지원내역 간에 관련성도 있는 만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용도에 이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임.

□ 그 외, 현행 규정은 기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한 반면, 개정안들의 지원기준을 도입할 경우 국가가 보험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정률 방식을 엄격하게 따라야 하므로, 국가재정수지나 건강보험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지원 규모 결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

개정안들은 건강보험 지출 규모가 아닌 건강보험료 ‘수입’에 국가 지원금 규모를 연동시키고 있어 건강보험료 징수 현황에 따라 국가 지원금 규모가 변동될 수 있는바, 당초 국가가 건강보험재정을 지원하는 목적이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진료비 지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입이 아닌 ‘지출’과 국가 지원금을 연동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음.

-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2.06%(최근 3년 평균)씩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장종태의원안의 경우 2025년 5,433억원, 2029년 3조 2,153억원 등 5년간 총 8조 2,388억원(연 평균 1조 6,478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됨⁵⁾.

<장종태의원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A)	24,455	25,526	27,556	29,764	32,153	139,454	27,891
현행제도 유지시 재정소요(B)	19,022	19,022	19,022	-	-	57,066	11,41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A-B)	5,433	6,504	8,534	29,764	32,153	82,388	16,478

- 주: 1. 개정안에 따라 산정된 기금 지원금(A)은 전전년도 건강보험 수입의 3%로 산출(2025년은 2023년 결산상 수입, 2026년 이후는 국회예산정책처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2023.10.)의 전망치 적용)
 2. 현행법에 따라 해당 연도 부담금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산정된 기금 지원금(B)은 기획재정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23.09.)과 보건복지부 2024년 예산을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소병훈의원안의 경우 2025년 2조 9,889억원, 2029년 6조 4,305억원 등 5년간 총 22조 1,841억원(연 평균 4조 4,368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됨⁶⁾.

- 5) 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7%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연 평균 8조 9,452억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고 추계함.
 6) 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4%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연 평균 7조 8,569억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고 추계함.

<소병훈의원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A)	48,911	51,051	55,112	59,528	64,305	278,907	55,781
현행제도 유지시 재정소요(B)	19,022	19,022	19,022	-	-	57,066	11,41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A-B)	29,889	32,029	36,090	59,528	64,305	221,841	44,368

주: 1. 개정안에 따라 산정된 기금 지원금(A)은 전전년도 건강보험 수입의 6%로 산출(2025년은 2023년 결산상 수입, 2026년 이후는 국회예산정책처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2023.10.)의 전망치 적용)
 2. 현행법에 따라 해당 연도 부담금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산정된 기금 지원금(B)은 기획재정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23.09.)과 보건복지부 2024년 예산을 적용
 3. 동 추계는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2.06%(최근 3년 평균)씩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로서, 건강보험료를 인상률이 달라질 경우 추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나, 지원 기준 변경은 대규모 재정투입이 수반되는 점,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보험료 수입 증가 추세 대비 담배부담금 수입은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건강증진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지원 상한 등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임.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구 분	의견 내용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국고지원 명확화 및 일몰규정 삭제가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지원기준 변경은 대규모 재정 투입이 수반되는 점, 탄력적 지원규모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 필요 • 보험료 수입 증가 추세 대비 담배부담금 수입은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건강증진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지원 상한)는 필요

기획재정부	• (정산규정) 사실상 2년 시차를 두고 정산하라는 취지이나, 정부 회계 중 전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은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교부되는 교부세(금) 및 국가기금으로 운영하고 정부가 고용주인 공무원·군인연금에 한정되며, 국가회계가 아닌 건강보험에 국고로 정산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곤란 • (일몰규정)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성격상 보험료 수입과 보험급여 지출 간 균형을 이루어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원칙인데, 2000년 의약분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악화된 건강보험수지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7년 한시적(일몰제) 국고 지원 중인 것을 삭제하는 것은 부적절 • (단서조항 삭제) 국가재정상황(부담금 수입액)에 대한 고려 없이 건강보험 수입의 일정비율로 국고지원 규정 시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불가하므로, 단서조항 삭제는 부적절
대한의사협회	• 일몰제를 폐지하고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 ‘상당하는’ 등 모호한 용어를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으로 명시함에 따라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함. • 장종태의원안(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 및 소병훈의원안(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6)은 전체지원 규모가 실질적으로 축소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 수준으로 올리는 등 국고지원의 양적 확대 필요

문 의 처

02)6788-5500

- (지원 배경) 건강보험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제도의 안정적 운영
 - 법령(일몰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을 매년 일반회계('88년~) 및 건강증진기금('02년~)에서 지원

* 기금의 건보 재정지원은 건강보험 재정적자('01년)에 대한 한시적 조치로 시작

당해연도 예상 보험료수입액의 **20% = 일반회계 14% + 증진기금**

- (지원 연혁)
 - ('88~'01년)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확대와 함께 지역의료보험 재정 **50%** 명목으로 국고지원 시작(실제지원율은 30% 수준까지 지속 하락)
 - ('02~'06년) 재정위기에 따른 '재정건전화특별법(~'06년 한시법)' 제정으로 지역재정* **50%** 국고지원 **법제화***(실제지원율은 42~46% 수준)
 - * “지역재정”은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 · 관리운영비
 - ** ('02~'04년) 일반회계 40%, 기금 10%, ('05~'06년) 일반회계 35%, 기금 15%
 - ('07~'11년) 특별법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수정 반영하여 '**11년** 까지 보험료예상수입 **20%*** 국고지원(실제지원율은 16~18% 수준)
 - * 현행과 같은 일반회계 14%, 기금 6%
 - ('12~현재) 부칙개정을 통해 **2~5년** 단위로 재정지원 유효기간을 연장*
 - * '11.12.31.개정(~'16.12.31.), '16.3.22.개정(~'17.12.31.), '17.4.18.개정(~'22.12.31.), '23.6.13.개정(~'27.12.31.)